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남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8.

발 의 자 : 김남근·김문수·민병덕
이훈기·박선원·이주희
박정현·이강일·남인순
김우영·김 윤·김현정
진성준·최혁진·염태영
백승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, 근로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별적 처우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,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.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, 사업주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, 차

별적 처우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
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
도록 함(안 제29조의2)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제2항 단서 중 “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”를 “3배의”로, “명령할 수 있다”를 “명령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.

1.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
2. 차별적처우등으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
3.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주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
4.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
5. 위반행위의 기간·횟수 등
6. 사업주의 재산상태
7. 사업주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4.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
징금

5. 위반행위의 기간·횟수 등

6. 사업주의 재산상태

7. 사업주의 피해구제 노력의
정도